#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934

발의연월일: 2024. 11. 27.

발 의 자 : 김 윤·강선우·장종태

김남희 • 이용우 • 전진숙

이수진 • 박정현 • 손명수

서미화 · 김문수 의원

(11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보건의료분야의 빠른 발전에도 불구하고, 낡은 현행 「의료법」 등 보건의료 관련 법률로 인해 전문성을 갖춘 개별 보건의료인력들이 역 량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.

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, 이를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재해 직역 간 업무가 중첩되는 영역을 중심으 로 보건의료인력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음.

이에 다수의 보건의료인력 개별법에서 규율하는 사항의 적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보건의료직역들, 시민대표, 전문가가 참여하는 「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」를 신설하여 보건의료직역별 업무범위가 업무 전문성과 업무 환경을 고려하여 해석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26조의2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6조의2(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) ① 「보건의료인력지원법」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업무(각각의 면허·자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)에 대해 업무 전문성과 업무 환경, 협업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그 구체적인 범위를 심의하기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(이하 "업무조정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업무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- 1. 「보건의료인력지원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의 면허
  -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범위 및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
- 2. 보건의료인력 간 협업과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
- 3. 분과위원회 구성 · 운영에 관한 사항
- 4.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
- ③ 업무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④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(보건복지부장관이 지

명하는 차관)이 되고, 부위원장은 제5항제4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- ⑤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.
- 1. 「보건의료인력지원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을 대표 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0명 이상
-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자단체 및 시민단체, 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10명 이상
- 3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0명 이상
- 4. 보건의료인력의 면허·자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0명 이상
- ⑥ 업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, 부위원장 및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, 제5항제1호의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 업무조정위원회 및분과위원회의 구성・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회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⑦ 업무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「보건의료인력지원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 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.
- ⑧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한 사항을 보건복

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,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⑨ 업무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조정위원회에 사 무국을 둔다.
- ①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조정위원회·분과위원회·사무 국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<u>&lt;신 설&gt;</u> | 제26조의2(보건의료인력 업무  |
|                    | 조정위원회) ① 「보건의료인   |
|                    | 력지원법」제2조제3호에 해당   |
|                    | 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업무(각   |
|                    | 각의 면허·자격의 근거가 되   |
|                    | 는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를    |
|                    | 말한다)에 대해 업무 전문성   |
|                    | 과 업무 환경, 협업의 필요성  |
|                    | 등을 고려하여 그 구체적인    |
|                    | 범위를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   |
|                    |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    |
|                    | 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(이하    |
|                    | "업무조정위원회"라 한다)를   |
|                    | <u> 둔다.</u>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② 업무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  |
|                    |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1. 「보건의료인력지원법」제2  |
|                    | 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  |
|                    | 의 면허·자격에 대한 구체적   |
|                    | 인 업무 범위 및 업무 조정에  |
|                    | 관한 사항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2. 보건의료인력 간 협업과 업 |
|                    | 무분담에 관한 사항        |

- 3. 분과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 한 사항
- 4.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 치는 사항
- ③ 업무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 명과 3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이상 100명 이 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④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(보건복지부장 관이 지명하는 차관)이 되고, 부위원장은 제5항제4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⑤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.
- 1. 「보건의료인력지원법」제2 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을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0명 이상
-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자

   단체 및 시민단체, 소비자단

   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10명

   이상
- 3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

<u>정기관 소속 공무원 10명 이</u> <u>상</u>

- 4. 보건의료인력의 면허·자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0명 이상
- ⑥ 업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, 부위원장 및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, 제5항제1호의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업무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・운영에 관한 사항에대한 회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① 업무조정위원회의 심의사 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 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 회를 둘 수 있다. 이 경우 분과 위원회의 위원은 「보건의료인 력지원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 가 추천하는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.
- 8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한 사항을

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야 하고,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.

⑨ 업무조정위원회의 업무를지원하기 위하여 업무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.

①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조정위원회·분과위원 회·사무국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